

ISA-2000-1/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의 근로조건 및 직무집행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 또는 수행하는 상임임원을 의미하며 직위는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및 회장으로 구분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도 회사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조 (적용제외)

본 규정 또는 회사와 임원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은 임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임원의 책무)

임원은 그 직무를 집행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부담한다.

1. 회사의 정관, 사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담당 사업의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임원은 담당 사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담당 사업 및 직무에 대한 치밀한 계획,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실적 및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담당 사업에 대하여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경영계획 및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영계획 및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담당 사업의 단기 경영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담당 조직의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최대의 팀웍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첨단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선진제도 도입, 신기술 개발 및 신규사업개척에 노력하여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선 임)

① 본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은 회사와 임원간에 체결하는 별지 1호의 임원선임 및 보수계약서에 의한다.

②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상근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선임계약서를 체결한다.

ISA-2000-2/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제 6 조 (선임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임후 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지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민권이 박탈되었거나 정지된 자
5. 이력 및 신상에 하자가 있는 자
6. 신체조건이 직무를 집행 또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 7 조 (제출서류)

①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선임전 또는 선임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회사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회사지정 국·공·사립 종합병원):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 및 직무경력카드(회사 소정양식): 각 1부
5. 주민등록 등본: 2통
6. 호적등본: 1통
7. 임원선임 및 보수계약서 (별지 1호): 1부
8. 영업비밀보호 및 겸업금지계약서 (회사 소정양식): 1부
9. 사 진 (반명함판): 2매
10.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①항의 서류 중 임원선임 전에 회사에 기제출한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제 8 조 (보 수)

① 임원의 선임시의 보수는 회사와 임원간에 체결하는 임원선임 및 보수계약서에 의한 보수액으로 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및 직전 계약기간에 대한 임원평가결과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은 보수 외에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경조금)

임원의 경조금에 관하여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ISA-2000-3/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제 10 조 (임원평가)

회사는 반기 또는 필요시에 임원의 경영능력 및 업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반 임원인사에 반영하며, 세부 평가항목, 내용 및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종료시점은 연말로 수렴한다. 단,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임원이 회사 이사로서의 임기와 본 규정에 의한 임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기로 한다.

② 회사는 임원의 재임기간 중에 그 경영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여 재선임 여부를 해당 임원에게 통지하며, 회사가 재선임을 원치않는 경우 해당 임원은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정 년)

임원 선임계약의 갱신은 만 60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퇴 직)

① 상기 11조, 12조 및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 임원의 선임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1. 임원이 사망한 경우
2. 임원이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3. 임원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임원이 이사회 회부되어 제13조 2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5. 임원이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제6조 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사는 임원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직무 집행 또는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2.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의 경우와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본항에 대하여 중복된 부분 삭제함)
4. 임원의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는 경우
5. 임원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사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ISA-2000-4/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제 14 조 (퇴직금)

① 임원의 임기만료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퇴직시의 의무)

① 임원의 임기만료, 의원사임 또는 해임시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사임 또는 해직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 제공 차량, 건강보험증, 제복, 문구, 다이어리 등 회사로부터 대여받았거나 회사가 제공한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회사에 채무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퇴직시까지 이를 완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임원의 재임기간중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퇴직으로 인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임원은 재임기간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여하한 경우에도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ISA-2000-5/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자)		
1. 본 규정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ISA-2000-6/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별지 1호) 임원 선임 및 보수계약서

임원 선임 및 보수계약서

본 임원선임 및 보수계약서(이하 “계약”)는 _____ 에 소재하는
 _____ (이하 “갑”)와 _____ 에 주소를 둔
 _____ (이하 “을”)간에 체결한다.

제 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갑”의 사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그 조건을 정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 2조 (집 무)
 “을”은 “갑”의 임원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범위 내 사무를 처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3조 (계약 기간)
 3-1. “을”의 임원 임기는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2. 임기중 반기평가(업무집행 및 업무수행 능력과 업적) 등을 통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3-3. 본 임기중이라도 임원집무규정 제6조, 제13조에 따라 임기만료(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 4조 (보수 등 보상조건)
 4-1. 보수
 본 계약기간 중 “갑”은 “을”이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4.1.1 본 계약기간 중 보수는 금 원 (₩ _____)으로 한다.
 4.1.2 보수는 기본보수(70%)와 성과보수(30%)로 구성된다.

구분	기본보수	성과보수	개인 동의(서명)
금액	<u>금</u> 원	<u>금</u> 원	

4.1.3 보수의 지급방식은 月定額(₩ _____)를 년 12회로 분할·지급한다.
 4.1.4 상기 보수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을”의 업적 및 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조정한다. 재선임시에 성과보수는 평가결과에 연동하여 가감하기로 한다.

ISA-2000-7/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4-1. 직책수당

“갑”은 “을”에게 내부 규정에 의하여 급여 외 대표이사 수당 등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4-2. 기타 복리후생은 “갑”의 임원 처우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 6조 (퇴직금)

6-1. 퇴직금 지급기준은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6-2. 본 계약의 만료 후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의 의무)

7.1 “을”은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갑”이 지정한 날까지 “갑”이 지정한 자에게 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7.2 “을”은 “갑”에게 채무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시 이를 완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3 “을”의 “갑”에 재임기간중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해 면하지 아니한다.

7.4 “을”은 “갑”에 재임기간중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을 여한한 경우에도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인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일부무효)

본 계약상의 각 규정들은 각기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 규정이 무효 또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여타 규정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 한 개 또는 수개의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同 규정이 축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한다.

상기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ISA-2000-9/9		임원집무규정		
제정:				
개정:				

(별표 1) 임원 경조금지급 기준표

임원 경조금 지급 기준표

(단 위: 천 원)

구 분		경 조 금		비 고
		대표이사	비대표이사	
결 혼	본 인	2,000	1,000	화 환
	자 녀	2,000	1,000	
회 갑	부 모	2,000	1,000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500	1,000	
사 망	본 인	사안에 따라 지급		조 화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000	2,000	
	자 녀	3,000	2,000	
이 재	화재 및 수재	사안에 따라 지급		

※ 교회(칠순)의 경우에도 회갑과 동일하게 지급함